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16호)이 2023. 1. 17. 제정됨에 따라 법률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스톱킹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로부터 조속한 회복을 통해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스톱킹 실태조사에 포함할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조)

나. 예방교육 실시, 자체 예방지침 마련 공공단체의 범위 등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다. 스톱킹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에 포함할 사항, 복합 사건인 경우 성폭력·성희롱 대책과의 통합 수립·시행 규정(안 제5조)

라. 취학 지원의 절차, 출석일수 산입 근거 규정(안 제6조)

마. 지원시설 설치·운영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시설 설비 및 운영, 종사자 수 등 세부 기준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바. 지원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및 교육 실시기준 마련(안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사. 그 밖에 민감정보 등 처리 근거,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토킹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스토킹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나이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스토킹의 발생 원인, 유형 및 빈도
3. 온라인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스토킹 현황 및 변화 추세
4. 그 밖에 스토킹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스토킹 실태조사를 스토킹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
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단체는 제외한다)

제4조(스토킹 예방지침 마련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
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자체 예방지침을 마련
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자체 예방지침과 통합하여 할 수
있다.

제5조(스토킹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재발방지대
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 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2. 스톱킹 방지조치 및 스톱킹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관 내 스톱킹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스톱킹이 성폭력 또는 성희롱과 복합된 사건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재발방지대책과 통합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① 법 제7조에 따라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학생인 경우 보호자가 피해자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은 스토킹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② 초등학교의 장은 스토킹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자등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자등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③ 중학교의 장은 스토킹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자등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추천하거나 재입학을 지원하는 피해자등에 대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④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의 장”은 “고등학교의 장”으로, “교육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⑤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읍·면·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해자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제7조(지원시설 설치·운영의 위탁)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전화 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4. 그 밖에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8조(지원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은 피해자등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지원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9조(종사자의 자격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지원시설 교육 전문기관)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말한다.

제11조(교육의 실시기준)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하고, 교육의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무과정: 사회복지, 여성복지 및 행정회계 일반에 관한 사항 등
2. 전문과정: 스토킹 피해자등에 대한 의료·주거·법률 지원체계, 통합지원 및 자원연계에 관한 사항, 지원 대상별 특성과 상담에 관한 사항, 피해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종사자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성가족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원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의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취학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업무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무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제8조 관련)

1. 입지조건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구조 및 설비

가.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특성에 맞도록 하고, 일조·채광·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 및 재해 방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지원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침실 및 거실

가) 적당한 난방 및 통풍시설을 하고 상당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을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상담실

사생활이 공개되지 아니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식당 및 조리실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목욕실

샤워설비 및 세면설비를 갖춰야 한다.

6)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 등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8) 급수·배수 시설

가)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이용한다. 다만, 상수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하수도법」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9)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설비 및 피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이용자가 상시 생활하는 시설은 시설의 형편에 따라 나목의 2), 3)의 시설을 겸용하거나 5), 6) 및 7)의 시설을 겸용할 수 있다.

라. 이용자가 상시 생활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나목의 1) 및 4)부터 6)까지의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운영기준

가. 운영규정

지원시설의 장은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 1) 지원시설의 운영 방침
- 2) 직원의 업무 분장
- 3) 지원시설 이용·입소 요령
- 4) 지원시설의 이용 수칙
- 5) 그 밖에 지원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중요 사항

나. 장부 등의 비치

지원시설의 장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 두어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장부

가) 지원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직원 관계철(인사기록카드·이력서·사진을 포함한다)

다) 회의록 관계철

라) 소속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관계 결의(決議)에 관한 서류

마) 문서철(보고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 송신 또는 수신한 문서를 포함한다)

바) 문서 접수·발송대장

2) 사업에 관한 장부

가) 지원시설의 이용자·입소자 관계 서류(신상조사서, 보호의 경과, 지도·상담, 법률 지원의 내용 등)

나)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다) 상담원 교육 관계 서류

3)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가)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나)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다) 예산서 및 결산서

라) 비품관리대장

마)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사) 각종 증명서류

4. 종사자의 수

지원시설에는 시설의 장과 상담원 1명 이상의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시설의 종사자는 업무 관련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별표 2]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지원시설의 장 및 상담원은 제2호의 개별기준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영 제10조에 따른 교육 전문기관이 개설·운영하는 제3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구분	자격기준
시설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스톱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스톱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톱킹·가정폭력·성폭력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스톱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상담원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스톱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4.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성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종사자 교육과정

분야	교육과정	이수시간
스토킹	○ 스톱킹에 대한 이해	20

피해지원	○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이해 ○ 스토킹 관련 법 및 정책·제도에 대한 이해	
------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	법 제18조제1항	300	700	1,000

제1항을 위반하여 사법경찰관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연 락 처	(02) 2100 - 6422